

수원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단1979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수

변 론 종 결 2021. 9. 9.

판 결 선 고 2021. 10.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2,994,55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원고의 언니이고, 원고와 피고의 모친은 C이고, C은 2018. 8. 28. 사망하였다.

나. 1) 용인시 수지구 D 외 1필지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E 아파트’라고 한다)는 G주식회사, 주식회사 H의 공유였다가 C과 피고가 2001. 10. 15.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4. 8. 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C 사망 후에는 C 지분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E아파트는 2021. 3. 24.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21. 3. 24.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이 사건 E 아파트에 관하여 2004. 8. 17. 채무자를 C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237,600,000원, 2006. 4. 14. 말소)가, 2006. 4. 13. 채무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360,000,000원, 2007. 4. 17. 말소)가, 2007. 4. 9. 채무자를 피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456,000,000원, 2021. 3. 24. 말소)가 경료되었다. 다. 원고는 2005년 7월경부터 이 사건 E 아파트에서 C과 함께 살았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E아파트 취득시 분양대금은 296,750,000원이었는데, C이 90,000,000원을 부담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C을 채무자로 담보대출을 받아 충당하였다. 피고는 2006. 4. 13.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고 대출액을 증액하였고, 2007. 4. 9.에는 대출액이 더 증가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E아파트에서 C과 함께 거주하면서 C을 부양하였다. 피고는 2014년 이전부터 원고에게 위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E아파트가 사실상 C의 집이고 피고가 나중에 보상해 주리라 믿고 이자를 대납해주었다. 이처럼 원고가 대납해 준 이자는 2014년 이전 무렵부터 2020. 6. 15.까지 합계 62,944,558원에 이른다.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 주면 나중에 충분히 보상해 줄 것처럼 기망하거나 강요하여 원고가 이자를 대납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62,944,558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하였으므로, 동액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수원시 장안구 J아파트 K호(이하 ‘이 사건 J아파트’라고 한다)를 분양받고 1999.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피고는 2004. 8. 17. C와 함께 이 사건 E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이 사건 J아파트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

피고는 2014년경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E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 이자 부담이 어려워졌다. 피고는 이 사건 E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하였지만 원고가 차후 이를 인수하겠다고 하면서 처분을 반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원고에게 대출금 이자 일부 분담을 요청하였고, 원고가 이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피고와 원고 사이의 약정에 기하여 원고가 이자를 대납하게 된 것이다.

원고는 그 동안 이자 부담에 관하여 피고에게 이를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없다가, C 사망 이후 이 사건 E아파트 소유권을 모두 원고에게 넘길 것과 이 사건 J아파트 명의 이전 대가도 과도하게 요구하면서 이 사건 소송까지 제기하였다.

가사 원고의 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E아파트에서 무상으로 거주하는 이익을 얻었는바, 적어도 그 이득액은 C 사망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상속재산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2018. 2. 1.부터 2021. 3. 24.경까지의 차임 상당액 중 피고 지분(3/4)에 상응하는 금액인 54,000,000원(월 1,500,000원씩 계산)에 이른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3. 판단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급부가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4. 선고 2017다37324 판결 등 참조).

원 · 피고 사이에 발생한 이 사건 J아파트 명의신탁 관련한 분쟁, C의 상속재산 관련한 분쟁 등은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리적 판단과는 별개의 쟁점이고, 원고의 대출금 이자 납부 당시에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이를 대납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원고의 의사표시 형성에 있어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거나 강요하여 이로 인해 원고가 이 사건 E아파트 대출금 이자 상당액을 납부하였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현정